#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ture of the Moon Treaty)

김 한 택 (Kim, Han-Taek)

Ⅰ. 서 론
II. 달조약의 국제법상 의미
III. 인류공동유산의 개념
IV. 결 론

# Ⅰ. 서 론

1967년 6월 아르헨티나의 대사인 Aldo Armando Cocca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약칭하여 COPUOS)의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에서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의미인 res communis humanitatis라는 개념을 소개한 바 있는데[1] 몇 달 후 몰타의 UN대사 Arvid Pardo가 제22차 UN총회에서 인류공동유산개념을 심해저에 적용시킬 것을 주장하였다.[2] 심해저를 기존의 상태로 방치할 경우 기술이 앞선 선진국들이 그 자원[3]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독점하게 될 우려가 강력하게 피력되어 결국 제3세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속에 마침내 1970년 12월 UN총회는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선언'[4]을 채택하고 심해저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원칙은 마침내 1982년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탄생될 때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되어 현재 심해저 자원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보다 3년 먼저 탄생한 1979년 '달조약'(Moon Treaty; 원래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협정",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은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같은 시기에 교섭되고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제정되었지만[5] 조약이 제정된 지 4반세기를 넘기고 있는데도 현재 당사자수가 11개국 밖에 안되어 그 효력이 약하다. 달조약은 COPUOS를 통해 제정된

---

1) UN Doc. A/AC.105/C.2/SR.75. of 13 Nov. 1967 참조.

2) UN GA/Res./234.(XXII), 18 Dec. 1967 참조.

3) 심해저의 많은 부분은 '망간노듈' (manganese nodule)로 덮여있다. 이 물체는 직경 4센티미터 정도로 50%가량의 망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리, 니켈, 코발트와 기타 금속들을 역시 함유하고 있다. 태평양에만 약 1조 5000만톤 가량의 망간 노듈이 흩어져 있으며,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 1평방마일내에 약 10만톤 정도까지 밀집되어 있다고 추산된다. 이는 인류가 최소한 2백년에서 1만 2천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동아일보 1989년 12월 21일자 17면).

4) UN GA/Res./2749(XXII), Dec. 17 1970; 원 명칭은 "국가관할권밖의 해저 및 해상(海床)과 그 지하를 규율하는 원칙선언" (Declaration of Principles Governing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the Subsoil Their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이다.

5) Nandasiri Jasentuliyana,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233(1999).

5개의 우주관련조약 중[6] 가장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 조약인데,[7] 협정체결 후 5년이 되어서 칠레, 필리핀, 우루과이, 네덜란드에 이어서 다섯 번째 비준국인 오스트리아가 UN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84년 7월 11일에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현재 달조약에 비준국은 11개국밖에 안되는 소수(칠레,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카자흐스탄, 우루과이,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이며, 프랑스, 과테말라, 인도, 페루, 루마니아가 서명국인데 우주개발국중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서명국이고, 가입국 대부분이 비우주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 영국을 비롯한 선진우주개발국들이 가입하지 않았고, 한국, 중국 일본도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Space Treaty; 정식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8]이 2004년 기준으로 당사국수가 98개국이고 서명국만 27개국인 점을 고려할 때 달조약은 그 영향력이 아직 미약한 조약임에는 틀림없다.

본 논문은 달조약이 우주관련조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 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의 유산개념이 국제법

---

6) 달조약과 우주조약을 제외한 우주관련조약은 다음과 같다.
-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외기권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은 1967년 12월 19일 UN총회에서 그 협정안이 결의로 채택되고 1968년 12월 3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일명 '구조협정', 1969년 4월 4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
-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은 1972년 3월 29일에 체결되었고 1972년 9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일명 '책임협약', 1980년 1월 14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
- 외기권 우주에 발사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은 1975년 1월 14일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1976년 9월 15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일명 '등록협약', 1981년 10월 15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

7) Stephen E. Doyle, Using Extraterrestrial Resources Under the Moon Agreement of 1979, 26 *Journal of Space Law*(이하 *JSL*로 약칭), 117(1998).

8) 1967년 10월 13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

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 II. 달조약의 국제법상 의미

### 1. 달조약의 내용

1969년 처음으로 달의 토양이 채취되어 지구에 소개되었을 때 우주자원의 장래 사용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되었는데 1970년 7월 3일 아르헨티나 대표가 COPUOUS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협정안"(Draft Agreement on the Principles Governing Activities on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을 제출하였다.[9] 동 협정안은 전문에서 달의 천연자원이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 우주조약은 이와 같은 활동을 규제할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동 조약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동 협정안 제1조는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모든 인류의 공동유산이다."라고 선언하고 그와 같은 천연자원의 사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은 좀 더 나은 생활수준과 경제 및 사회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두에게 향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0] 그 후 몇 년 동안의 교섭끝에 1979년 12월 18일 일명 '달조약'(Moon Treaty)이라고 불리는 전문과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달과 다른 천체에 관한 국가활동을 규제하는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 반대없이 컨센서스(consensus)방식으로 당시 152개국이었던 UN회원국들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달조약은 태양계내에서 지구를 제외하고 달과 다른 천체와 그것들의 천연자원을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라고 천명한 것이며, 이는 국제법사상 최초로 새로운 국제영역인 인류공동유산영역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조약이라는

9)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Legal Sub-Committee, 9th Session, UN Doc. A/AC 105/C. 2/L. 71 and Corr.1(1970).

10) Nicolas Mateesco Matt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Outer Space; Toward a New International Order for Survival. 12 *Annals of Air and Space Law*(약칭하여 *AASL*), 328(1987),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11] 여기서 다른 천체란 태양계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은하계 등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의 과학수준을 고려하여 태양계만으로 국한하자는 스웨덴의 주장이 관철되어 태양계의 천체를 의미하게 되었다.[12]달과 다른 천체의 우주자원에 관하여 미국 남가주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Carl Q. Christol 교수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 그 첫 번째는 '태양계내에서'(within the solar system) 지구를 제외한 달과 다른 천체들이고 두 번째는 달 주변의 궤도(orbit)나 달에 대한 또는 주변의 행성궤도(trajectories)를 들고 있다.[13]

달조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달조약 제3조에 우주의 평화적 사용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달조약 제3조 1항은 달과 다른 천체는 당사국에 의해서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1967년 우주조약 제4조를 재확인하고 있는데, 달조약 제2조에서는 달에서의 모든 활동은 국제법, 특히 UN헌장과 함께 1970년 10월 24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우호관계선언"[14], 국제평화와 안전, 모든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달조약 제3조는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달 주위의 궤도나 달에 이르는 기타의 궤도 또는 달 주위에 핵무기나 기타의 대량파괴무기를 탑재한 물체를 배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 함께 우주에서의 전면적인 비군사화 내지는 모든 군사활동의 금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15]그러나 재래무기의 배치는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도 있는데,[16] 사실 미국 정부는 평화적이라는 의미를 '비군사

11) Bin Cheng, Outer Space: Legal Framework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Outer Space, Space Objects and Spacemen, 10 *Thesaurus Acrosium*, 81(1981).

12) UN Doc. A/AC. 105/196.

13) Carl Q. Christol, The Moon Treaty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20-II *AASL*, 36-7(1997).

14) 원명칭은 "UN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이다.

15) Bin Cheng, Moon Treaty: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within the Solar System Other than Earth, December 18, 1979, 33 *Current Legal Problems*(이하 *CLP*로 약칭), 222(1980).

16) John H. Works, Jr., The Moon Treaty, 9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283(1980).

적'(non-military)이라기보다 '비공격적'(non-aggressive)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17]

그리고 달조약 제3조에서 1967년 우주조약에서 볼 수 없는 표현인 달에서 무력의 사용과 위협은 물론 '다른 적대행위나 적대행위의 위협'(any other hostile act or threat of hostile act)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1977년 "환경수정기술에 관한 제네바 협약"(원 명칭은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다른 적대적 이용에 관한 금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18]에 나오는 '그와 같은 기술의 군사적 사용이나 적대적 이용'(military or any hostile use of such techniques)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19]

그리고 비차별적인 과학적조사의 자유를 들 수 있는데 달조약 제4조 1항에 "달의 개발과 이용은 모든 인류의 영역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것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전의 정도에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달과 그 천연자원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닌 국가만이 아니고 모든 인민들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20] 달조약 제6조 2항은 과학적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는 과학적 조사 중에 체약국은 표본을 수집할 권리와 그와 같은 임무에 도움을 줄 달의 천연자원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조약 제8조는 모든 국가는 달 위에서 어떠한 탐사활동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우주물체, 사람, 우주선, 장비, 시설물을 달에 착륙시키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타인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경우 관련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달조약 제9조는 유인 및 무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고, UN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우주정거장의 위치와 목적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달조약 제10조는 당사국들에게 달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

17) 달조약 채택 후 우주위원회(Outer Space Committee)의 미국측 대표인 Mr. Hosenball도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A/AC. 105/PV.203, 22(July 3, 1979) 참조.

18) 16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88(1977); 1986년 12월 2일 한국에 대하여 발효.

19)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Oxford, 413(1997).

20) Chistopher C Joyner, Legal Implications of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35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terly*, 197(1986).

있다.

그리고 환경보전조항을 들 수 있는데 달조약 제7조는 달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체약국은 환경을 보전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며 UN사무총장에게 그들에 의해서 취해지는 조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약국은 가능한 한 UN사무총장에게 달에 방사능물질을 배치하기 전에 보고해야 하며 그와 같은 배치의 목적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7년 우주조약 제9조에 명시된 환경보전조항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달조약은 제15조에 만일 어느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조약적용에 의심이 있으면 달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가간 협상이 고려되어 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법적 강제관할권 조항은 없다. 또한 이러한 협상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UN사무총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 달에 사람과 구조물, 다른 시설물을 발사한 국가는 관할권을 가지고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달 조약의 핵심은 인류공동유산개념인데 이와 관련된 조항은 제11조이다. 우선 제11조 1항에서 달과 그것의 천연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11조 2항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와 동일하게 달은 주권의 주장, 사용이나 점령, 기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국가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전유원칙'(principle of non-appropriation)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3항에서 달의 표면 또는 그 지하, 달의 어느 부분이나 달에 위치한 천연자원은 어느 국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구, 국가기관, 비정부간 기관 또는 어떠한 자연인의 재산이 될 수 없으며 달의 표면이나 그 지하에 사람, 우주차량, 장비, 시설물, 기지 및 군사시설은 달의 표면이나 지하를 연결한 구조물과 함께 달의 표면이나 지하 또는 어느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창설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는 제11조 제5항에 언급된 '국제제도'(international regime)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4항에서 당사국은 평등에 기초하고 국제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달의 탐사와 이용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제도와 관련하여 제11조 7항에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① 달의 천연자원의 질서있고 안전한 개발
② 동 자원의 합리적 경영
③ 동 자원의 사용기회의 확장

④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제도는 당사국이 달의 자원개발이 가능한 시기에 수립할 의무를 지며(달조약 제11조 5항) 또한 이와 같은 국제제도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달에서 발견되는 모든 천연자원에 관하여 최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UN사무총장, 대중(public) 및 국제과학공동체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달조약 제11조 6항).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21] 사실 달조약에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미국내 우주개발그룹인 L-5 Society는 미국무성이 달조약은 우주자원의 질서있고 안전한 개발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는 조약이며 제한성이 우주조약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달조약을 사기업의 개발을 유예시키고 선진국을 희생하면서 제3세계가 통제권을 가지는 조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하여 그 당시 COPUOS의 미국대표였던 Neil Horsenball이 달조약은 국제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개발유예를 부과하지 않으며 단지 자원개발이 가능하고 실질적일 때 질서있는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22] 소련대표도 어떠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23]을 보아도 이것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

21) Sylvia Maureen Williams. Celestial Bodies, 11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이하 *EPIL*로 약칭), North-Holland, 53(1989) 그리고 Eilene Galloway,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5 *AASL*, 500(1980) 참조.

22) Nandasiri Jasentuliyana, *op. cit.*, 231(1999).

23) Carl Q Christol, The Moon Treaty Enter into Force, 79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66(1985).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24]

또한 달 조약 제11조 7항 d에 명시된 구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는데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당사국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가공하지 않은 산물(raw product)에 대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의 분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평분배란 단순한 평등분배가 아니고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한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분배를 의미한다는 점이다.[25] 이것은 필자 나름대로의 해석이긴 하나 '배분적 정의'(justitia distributiva)에 기초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 같다. 즉 당사국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달 개발에 공헌한 국가와 개발도상국을 좀 더 실제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 2. 1967년 우주조약과의 관계

1963년 12월 13일 UN총회는 "우주활동의 법원칙"(이 결의의 정식 명칭은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26]을 선언하면서 COPUOS로 하여금 이러한 법원칙을 성문화된 조약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총회의 요구에 따라 COPUOUS는 우주활동에 관한 성문법제정작업에 착수하여 수년간의 준비작업과 교섭을 추진하여 원칙조약안을 마련하였다. COPUOS에서 원칙조약안이 마련되자 UN총회는 1966년 12월 19일 UN결의 2222(XVI)를 통하여 국제법상 최초의 우주조약을 탄생시켰다. 1967년 1월 27일에 체결된 이 '우주조약'(Space Treaty)의 정식명칭은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24) Kevin B Walsh, Controversial Issues under Article XI of the Moon Treaty, 6 AASL, 494(1981).

25) Eilene Galloway, *op. cit.*, 500.

26) UN Res. 1962(XVIII), 13 December 1963; 이 결의의 주요 내용은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 9개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라고 일컬을 정도로 우주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류와 우주활동의 관계를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은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류의 영역'(the province of all mankind)이어야 한다."

달조약이 태양계내의 지구를 제외한 달과 천체에 적용된다면 1967년 우주조약은 태양계내의 지구를 제외한 달과 천체는 물론 '태양계밖의'(outside the solar system) 천체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27]

우주조약 제2조에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 사용 또는 점유의 방법을 통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가전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1967년 우주조약이 제정되기전 일반국제법상 우주와 천체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런던대학교(UCL) 법대 항공·우주법 교수였던 Bin Cheng교수는 우주는 공해(公海)와 같이 res extra commmercium(國際公域)[28]의 지위를 가지며, 천체는 마치 콜럼부스(Christopher Columbus)가 발견한 신세계와 같이 법적으로 실효적 점령을 통하여 지배할 수 있는 terra nullius(無主地)와 같다고 한 바 있다.[29] 그러나 1967년 우주조약은 달과 다른 천체들이 법적지위를 res nullius에서 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30] res extra commercium은 마치 공해(high seas)의 지위와 같아서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 없고, 다만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1967년 우주조약상 우주와 천체의 법적지위인 res extra commercium은

---

27) H. A. Wassenbergh, Speculations on the Law Governing Space Resources, 5 AASL, 617(1980).

28) res extra commercium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불융통물(不融通物)이 되어야 하나 국제공역(國際公域, international public domain)과 같은 성격이므로 국제공역으로도 변역될 수 있다.

29)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p. cit.*, 228-9.

30) Sylvia Maureen Williams, *op. cit.*, 52(1989).

현재 국제관습법으로 수용될 만큼 발전되었는가? 만약 1967년 우주조약에서 부여하는 res extra commercium이라는 법적지위가 조약당사국 뿐만 아니라 비당사국에게도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1979년 달조약상 우주와 천체의 지위인 인류공동유산영역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필자의 견해로는 1967년 우주조약상 res extra commercium은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물론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달과 다른 천체의 전부나 일부를 자국영토로 식민지화 하거나 전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유의 원칙(principle of non-appropriation)은 Rüdiger Wolfrum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31]

이와같이 1967년 우주조약이 달과 다른 천체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선언한 조약이라면 달조약은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이용에 관한 특별규정을 담고 있으므로[32] 1967년 우주조약과 달조약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lex specialis)의 관계로 파악하는 학자도 있다.[33]

## III. 인류공동유산의 개념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의 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 1. res extra commercium

res extra commercium 개념은 res communis(公有物 또는 共有物)의 개념도 함께 포함하는 것인데 우선 res communis에 대하여 Black's Law Dictionary에 수록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Rüdiger Wolfrum, Common Heritage of Mankind, 11 *EPIL*, 67(1989).

32) Carl Q. Christol,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ovision in the 1979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4 International Lawyer 429-430(1980).

33) H. A. Wassenbergh, Speculations on the Law Governing Space Resources, op. cit., 624.

"민법상 모두에게 공통되는 물건으로서 부분적으로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 또는 향유될 수 있으나 빛이나 공기처럼 전체로서는 독점적으로 취득될 수 없는 것"[34]

따라서 res communis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전유(專有)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35] res communis는 res extra commercium 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 엄밀히 분석해 보면 res communis는 각 국가가 이에 대한 지분을 갖고 그 지분의 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res extra commercium은 사법상의 불융통물(不融通物)과 같이 소유의 객체로 되나 거래가 금지되는 것인데 두 개념 모두 각 국가가 이것을 전유할 수 없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곳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주로 공해(high seas)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이 이론이 수용되고 있으며 우주에 관하여도 적용되고 있다.[36]

## 2. 인류공동유산의 개념

인류공동유산개념(territorium commune humanitatis)은 res communis나 res extra commercium의 관계에서 볼 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Bin Cheng교수는 다음과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res extra commercium(또는 territoruim extra commercium)과 인류공동유산영역이 어떤 국가에 의해서도 영토로서 전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지니나 전자가 소극적인 개념이고 후자가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res extra commercium에 있어서는 평화시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선박, 항공기, 우주선에 대하여 배타적 준영토관할권(quasi-territorial jurisdiction)[37]을 존중하는 한 일반국

34) Black's Law Dictionary, 6th ed, 1304-5(1990).

35) B. Larschan and B. C Brennan. Common Heritage Mankind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21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15(1983).

36) Bin Cheng, Outer Space: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Outer Space, Space Objects and Spacemen, op. cit., 56, 75.

제법은 그러한 국가에게 동 지역을 사용할 것과 심지어는 원하면 다소의 남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동 지역내에서 국가들은 천연자원의 취득, 무기실험과 군사훈련을 위해서 광범위한 지역을 봉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국내산업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장으로서도 이곳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인류공동유산개념은 아직까지 이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류공동유산영역내에서의 천연자원의 경영, 개발, 분배는 개별국가나 국민의 창의나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38]

따라서 전통국제법에서는 영역을 국가영토, 무주지, res extra commercium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 인류공동유산영역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현재 무주지 이론이 적용될 곳은 엄격한 의미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975년 10월 16일의 "서사하라 사건"(Western Sahara Case)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서도 국가영토가 아니라고 해서 무주지라고 단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39]

국제법상 인류공동유산원칙은 개념정의가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를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요소를 지닌 분명한 법적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동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의 천연자원은 어느 국가나 자연인 또는 법인도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통하여 전유될 수 없다는 비전유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전유의 원칙은 Rüdiger Wolfrum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 강행법규(jus cogens)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둘째, 동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의 천연자원의 경영, 개발, 분배는 반드시 국제제도(international regime)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제도의 모델은 1982년 UN 해양법협약에 명시된 국제심해저에 적용되는 제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셋째, 동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의 탐사 및 자원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므로 각 국가의 국민은 물론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비자치지역의 인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

37) Bin Cheng 교수는 관할권을 영토관할권(territorial jurisdiction), 준영토관할권(quasi-territorial jurisdiction) 그리고 인적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준영토관할권이란 국가가 자국의 선박, 항공기, 우주선 등의 수송수단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할권인데 수송수단은 소유권, 국적, 등록 또 다른 인정된 관련성을 통하여 관계국가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Bin Cheng, The Extra-terresti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18 CLP, 135(1965).

38)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op. cit.*, 436.

39) ICJ Reports, 39(1975).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이익배분원칙에는 동 지역의 개발에 공헌한 국가는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하며 분배는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동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동 지역은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967년 우주조약 제4조, 1979년 달조약 제3조, 1959년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제5조 그리고 1971년의 심해저비핵화조약[40]이 이미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섯째, 동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은 현세대는 물론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환경보존에 주력해야 함을 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환경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생태적으로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 여섯째, 동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과학적 조사는 조사에 후원을 한 국가나 정부단체 뿐 아니라 모든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 IV.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41]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

40) 공식명칭은 "심해저와 해상 및 하층토에 핵무기 및 다른 대량파괴무기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the Empla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in the Subsoil Thereof)"

41) Carl Q. Christol, The Moon Treaty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op. cit., 47.

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의 접근성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데에 있다.

우주법학자인 Nandasiri Jasentuliyana는 어쨌든 달조약은 모든 UN회원국의 공동의 지혜를 모아서 만든 조약이며 우주개발기술을 미리 발전시킨 국가들의 필요와 가능성을 반영하는 조약이라고 말하고 있다.[42] 다시 말해서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주개발국인 미국과 구소련 그리고 비우주개발국인 개발도상국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작품인 것이다. 또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Aberdeen 대학교 법대 France Lyall교수도 달조약의 의의는 전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無의 상태보다는 나을 것이고 비록 구체적인 제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에 적용된 남극모델이 우선 적용되고 달자원의 개발이 가시화 될 시기에 1982년 UN해양법상 국제심해저기구와 유사한 달기구(Lunar Authority)를 만들어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의도 하고 있다.[43] 필자가 이해하기에는 영유권동결을 전제로 과학조사의 자유 및 탐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발의 시기가 도래하면 심해저기구방식을 택하는 방식일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44]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42) Nandasiri Jasentuliyana, *op. cit.*, 235(1999).

43) Francis Lyall, On the Moon, 26 *JSL*, 135(1998).

44) Carl Q. Christol, The 1979 Moon Agreement: Where Is It Today?, 27 JSL 26-30 (1999).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Bin Cheng, The Extra-terresti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18 Current Legal Problems (이하 CLP로 약칭) (1965),

Bin Cheng, Moon Treaty: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within the Solar System Other than Earth, December 18, 1979, 33 CLP (1980).

Bin Cheng, Outer Space: Legal Framework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Outer Space, Space Objects and Spacemen, 10 Thesaurus Acrosium (1981).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Oxford (1997).

Carl Q. Christol,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ovision in the 1979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4 International Lawyer (1980).

Carl Q Christol, The Moon Treaty Enter into Force, 79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5).

Carl Q. Christol, The Moon Treaty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20-II Annals of Air and Space law(약칭하여 AASL) (1997).

Carl Q. Christol, The 1979 Moon Agreement: Where Is It Today?, 27 JSL (1999).

Stephen E. Doyle, Using Extraterrestrial Resources Under the Moon Agreement of 1979, Journal of Space Law(이하 JSL로 약칭) (1998).

Eilene Galloway,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5 AASL (1980)

Nandasiri Jasentuliyana,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Chistopher C Joyner, Legal Implications of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35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terly (1986).

B. Larschan and B. C Brennan. Common Heritage Mankind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21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1983).

Francis Lyall, On the Moon, 26 JSL (1998)

Nicolas Mateesco Matt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Outer

Space; Toward a New International Order for Survival. 12 AASL (1987)

Kevin B Walsh, Controversial Issues under Article XI of the Moon Treaty, 6 AASL (1981).

H. A. Wassenbergh, Speculations on the Law Governing Space Resources, 5 AASL (1980).

Sylvia Maureen Williams. Celestial Bodies, 11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이하 EPIL로 약칭), North-Holland (1989)

Rüdiger Wolfrum, Common Heritage of Mankind, 11 EPIL (1989).

John H. Works, Jr., The Moon Treaty, 9 Denver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1980).

# 초 록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Abstract

This article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 1979 Moon Treaty and its future. Although the Moon Treaty is one of the major 5 space related treaties, it was accepted by only 11 member states which are non-space powers, thus having the least enfluences on the field of space law. And this article analy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979 Moon Treay and 1967 Space Treaty which was the first principle treaty, and searched the meaning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hereinafter CHM)" stipulated in the Moon treaty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also dealt with the present and future problems arising from the Moon Treaty.

As far as the 1967 Space Treaty is concerned the main standpoint i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 is res extra commercium, area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like high seas. It proclaims the principle non-appropriation concerning the celestial bodies in outer space. But the concept of CHM stipulated in the Moon Treaty created an entirely new category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This concept basically conveys the idea that the management, exploitation and distribution of natural resources of the area in question are matters to be deci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re not to be left to the initiative and discretion of individual states or their nationals. Similar provision is found in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that operates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created by the concept of CHM.

According to the Moon Treaty international regime will be established as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elestial bodies other than the Earth is about to become feasibl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regime we could imagine moratorium upon the exp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n the celestial bodies. But the drafting history of the Moon Treaty indicates that no moratorium on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was intended prior to the setting up of the international regime. So each State Party could exploit the natural resources bearing in mind that those resouces are CHM. In this respect it would be better for Korea, now not a party to the

Moon Treaty, to be a member state in the near future. According to the Moon Treaty the efforts of those countries which have contribut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e exploitation of the moon shall be given special consideration.

The Moon Treaty, which although is criticised by some space law experts represents a solid basis upon which further space exploration can continue, shows the expression of the common collective wisdom of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nd responds the needs and possibilities of those that have already their technologies into outer space.

주제어 : 달조약, 우주조약, 인류공동유산, 국제공역, 비전유원칙, 국제제도

Key Word : Moon Treaty, Space Treaty, Common Heritage of Mankind, res extra commercium, principle of non-appropriation, international regime